
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규정

2021. 8. 27.



(사)대한근대5종연맹

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규정

2021. 8.27. 제정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대한근대5종연맹(이하 “본연맹”라 한다) 정관 제37조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위원회는 근대5종 초.중.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운동부의 운영 문제점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며, 유관단체와 학교체육 관련 현안사항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본 연맹에 등록한 학교운동부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.
② 본연맹, 시·도지부(이하 “시.도지부”라 한다.)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권리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.

1.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
2.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
3.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의 스포츠활동 활성화 및 선순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부위원장 3인 이내
3. 위원 20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② 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본 연맹에 등록된 지도자 중 각 시.도연맹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 받아 선임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임한다.
2. 본 연맹 정관 제39조제1항에 따라 본 연맹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

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3. 근대5종 육성대학이 단일 대학에 국한되어 있어, 정관 제3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.도연맹에서 추천한 자는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,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와 관련된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4. 회장의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5. 남·여 위원의 비율에 대해 가급적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.

6. 위원은 16세 이상이어야 하며, 세계 반도핑 규약(World Anti - Doping Code)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.

7. 그 외의 위원은 법률, 인권 분야 등 전문가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중 회장이 추천한 자로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위원장이 본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제6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4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7조(임기) ① 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 정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

제9조(회의 소집)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제1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11조(긴급한 업무처리)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12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.

제13조(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설치 의무) ① 본 연맹은 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.

〈부 칙〉

부 칙 <2021. 8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연맹 등록 지도자 중 시.도연맹에서 추천한 자에 대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.